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육성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2025년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① 마감일 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기업회원으로 가입 시** 인증까지 1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필히 사전에 회원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 070-7599-2702)
- ② 접수기한(3월14일~4월3일) 내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육성 및 원스톱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신청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전 기술 분야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예비15백만원, 초기30백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 사업화 지원금 | ⊕ | 역량강화 프로그램 |
|--|---|--|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IR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등 창업프로그램 운영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 **선정규모** : 총 40개사(예비창업자 10명, 초기창업자 30개사)
☞ 초기창업자 중 경기북부* 소재 기업 10개사 이상 지원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 지원금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15백만원/명), 초기창업자(30백만원/개사)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사업화 지원금 집행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참여자(기업)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송달료, 국제출원료, 번역료 등)
인건비	참여자의 소속 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제외), 1인당 1개월 기준 3백만원 한도 내 집행
전시회 참가비 (박람회)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 * 협약 기간 내 개최만 집행 가능
시험·인증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 에 소요되는 비용
멘토링비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 * 2백만원 한도 내, 총 10회(1일 2시간 이상, 20만원/일)
기자재 임차비	해당 과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사무실 임차료	창업과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 내 위치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참여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경영 등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5백만원 한도 내
세무회계기장비	참여자의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2백만원 한도 내)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구분	세부조건
예비창업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 법인)이 없는 자
초기창업자	○ 사업개시일이 경기도 내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개인 · 법인 대표자) ▶ 신청가능 업력 : 2022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 · 본사 기준) 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 ·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기업확인서 : 신청 자격 적합 여부 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동 공고 「별첨」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 시설·공간·보육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사무편람,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경기도 지원사업비)을 지급 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초기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을 경기도에 유지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3월 14일(금) ~ 4월 3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 신청·접수(www.gsp.or.kr)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을 실시
-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시 최종 접수 인정
- 사업계획서[제1호 서식]는 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유의 사항 >

- ①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 · 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신청 불가)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My space → 활동이력 → 지원사업」에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가능
- ③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의 **창업구분 여부**를 택1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필수 확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온라인 입력 후 파일 첨부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작성 시 「파일.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제1호 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2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제3-1호 서식] ○ 기업의 범위반 사실 여부 약서 [제3-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 접수마감일까지 미발급 시 4월 23일(수) 18시까지 이메일 접수(gchangup@gbsa.or.kr)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자 선정평가 절차 >

① 적격확인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선정
신청 자격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2배수 내외 상정)		발표 · 질의응답 (15분 이내)		개별 안내
상시		'25.4월 중순		4월 말 또는 5월 초		'25.5월 초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적격확인**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적격확인,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상시 진행되며, 협약 이후에도 자격 미충족 등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평가 대상자는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로 함
- ③ **발표평가** : 신청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항목 평가
 - 신청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와 법위반 사실여부에 대해 조회하여 그 결과를 최종 선정 시 반영함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평가지표

○ 창업과제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과제 배경 및 필요성, 창업과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등
실행가능성	○ 창업과제 현황(준비정도), 창업과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등
성장전략	○ 비즈니스 모델 및 추진성과, 창업과제 사업화 추진 전략, 사업추진 일정 및 자금운용 계획 등
팀구성	○ 기업구성 및 보유 역량,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계획 등

□ 사업 추진일정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3월	⇒	신청 · 접수 경기스타트업플랫폼 ~'25.4월	⇒	적격검토 · 선정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5월	⇒	선정공지 개별 안내 ~'25.5월
↓						
완료평가 참여자 · 경과원 협약 종료 시점	⇐	진도점검 참여자 · 경과원 상시	⇐	사업수행 참여자 협약기간 6개월	⇐	협약체결 선정자 · 경과원 ~'25.5월

□ 신청 및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과제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사무편람」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경기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 시,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할 수 있음
- 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하며 모집 공고 기간이 겹쳐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지원사업을 선택하며,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사무편람」, 기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제재 조치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7

문의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www.gsp.or.kr)

- (회원가입 · 시스템) 070-7599-2702 / gsp@gbsa.or.kr

□ 지원사업 문의(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 (신청자격 · 지원내용) 031-8039-7105, 8039-7113 / gchangup@gbsa.or.kr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예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예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④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2차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파악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